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10.04.12 조례 제 784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979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992호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11.20 조례 제1051호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07.03 조례 제1543호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연맹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4·8·8>

②연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연구
2. 탈과 상징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
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4. 한국 및 국제적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5. 세계적인 탈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6. 탈 관련 인적·물적·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내 문화활동의
독려와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7. 그 밖에 연맹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세계탈문
화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
업

[본조신설 2014·8·8]

제4조(정관) ① 연맹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맹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연맹의 설립·운영과 국제총회개최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5·1·2>

[제3조에서 이동 <2014·8·8>]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4·8·8>]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4·8·8>]

제8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연맹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맹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8·8>]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맹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8·8>]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연맹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
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20·7·3>

[제8조에서 이동 <2014·8·8>]

제11조(수익사업) 연맹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4·8·8>]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
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11·20>

[제10조에서 이동 <2014·8·8>]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
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8·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8·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연맹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8·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 (24) 생략

부칙 <2015·11·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43호, 2020·7·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
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48) (생략)